

● 제283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민간위탁 동의안(79)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동의안(80)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81)

서울특별시립 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82)

검 토 보 고 서

2018. 9. 1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79, 80, 81, 82

I. 제출자 및 제출경과

1.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가. 의안번호 : 79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8년 8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가. 의안번호 : 80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8년 8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3.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 의안번호 : 81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8년 8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4. 서울특별시립 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가. 의안번호 : 82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출일자 : 2018년 8월 16일

라.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Ⅱ. 제안이유

1.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서울시 서남권의 노인성 질환 전문 병원으로서 재활의료에 특화되어 성인 및 노인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명칭 및 위치)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개원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나. 재활 및 노인성질환진료 사례 경험이 풍부하고 병원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한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보고(17. 4. 21)로 진행되어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함

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서울시의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시민과 지역 사회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등 공공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명칭 및 위치)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나. 행려환자 등 의료취약층의 치료경험이 풍부하고 시민보건향상에 전문성

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보고('17.6.19)로 진행 되어 사후 동의를 받고자 함

3.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는 정신질환자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 수행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나. 전문 법인(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전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4. 서울특별시립 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가. 시립영보정신요양원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가 입소하여 요양 및 보호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나. 전문 법인(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립영보정신요양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노인성 질환·재활 전문병원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달성하고 동시에 병원 경영이라는 수익성을 부가적으로 추구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성과 다년간의 공공의료 기관의 성공적 운영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재활 및 노인성질환,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 공공의료 확충사업 등 공공의료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시설명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신정동)
- 시설규모 : 대지 11,189.40㎡, 건물 39,262.5㎡(지하4층, 지상8층)

- 지원시설 : 노인성질환 전문진료
- 개원일자 : 2011년 5월



- 종별 : 병원
- 층고 : 지하4층, 지상8층
 - 외래부 : 진료실 검사실 재활의학센터 등
 - 병동부 : 일반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 의료정보통합시스템 : EMR, PACS, OCS

마. 민간위탁기간

- 2017년 8월 27일 ~ 2020년 8월 26일(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총 9,457,322천원('18년 예산)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사 업 별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
합 계	9,087,763	9,457,322
민간위탁금	8,943,963	8,535,522
공공의료손실보전	8,366,129	7,680,000
무료간병 사업운영	407,664	466,815
백세건강센터	75,867	72,929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17,000	17,000
뇌혈관 튠튼 프로젝트	21,500	21,500
301 네트워크	50,803	277,278
학대피해노인 의료지원	5,000	-
민간대행사업비	143,800	921,800
의료장비 구입	143,800	100,000
노후 정보보안 장비 교체	-	135,300
웹 접근성 인증을 위한 고도화	-	16,500
서남병원 중환자실 확대운영	-	670,000

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시민보건향상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여야 하는 공공성을 달성하고 동시에 병원 경영 이라는 수익성을 부가적으로 추구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성과 다년간의 공공의료 기관의 성공적 운영경험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시민과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시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전염병예방 등 보건의료사업
-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 의학연구(임상연구 포함)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시설명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용두동)

- 시설규모 : 대지 5,364 m^2 , 건물 22,825 m^2 (지하 4층, 지상 6층)
- 지원시설 :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한 종합병원
- 개원일자 : 2004년 3월



- 종별 : 병원
- 층고 : 지하 4층, 지상 6층
 - 외래부 : 진료실, 검사실, 응급실 등
 - 병동부 : 입원실

마. 민간위탁기간

-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총 8,699,401천원('18년 예산)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사 업 별	2017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
합 계	6,688,640	8,699,401
운영보조금	5,106,850	5,639,296
공공의료 손실보전	4,835,037	5,097,840
공공확충사업	271,813	541,456
자본보조금	1,581,790	3,060,105
건물	617,000	100,000
기계장치	130,000	170,000
의료장비	496,500	427,105
차량운반구	38,290	35,000
공기구비품	300,000	2,328,000

3.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 위탁사무명 :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 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2007년 최초 위탁한 지역사회전환시설(구 단기보호시설) 새오름터는 전국 최초 병원에서 지역으로 탈원화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여 서울시립고양정신병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음.
- 2007년 수탁이후 현재까지 4회, 10년 이상 연속하여 모덕의료재단이 수탁받아 운영 하였기에 재위탁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접수 후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탁기관 선정)


다. 위탁사무 내용

- 정신의료기관에 장기입원 등 탈원화 대상 우선 관리
-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 및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사업
- 지역내 정신질환자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단기집중 재활 훈련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연계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서비스 제공

- 기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합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22길 4
- 운영주체(지정병원) : 의)모덕의료재단(고양정신병원)
- 종사자현황 : 8명 (정신보건전문요원 7명, 사회복지사 1명)
- 시설현황

운영법인	시설물	시설 현황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고양병원)		시설명 : 새오름터(시유지 건물) · 입소정원 : 25명 · 주소지 : 은평구 연서로 22길 4 · 건물(연면적/ 층수): 554.08m ² /지하1층, 지상3층 · 대지면적 : 232.10m ² · 2005년 12월부터 운영 · 연락처 : 3157-0885 (시설장: 서옥순)

마. 민간위탁기간 : 5년(2017.12.30. ~ 2022.12.29)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77,873천원(2018년)
- 산출근거 : 인건비 428,743천원, 관리운영비 41,130천원
프로그램비 8,000천원

항목	예산액(천원)	산출근거
총 액		477,873,000원
인건비 (428,743)	인건비 (428,743)	· 새오름터 8명 인건비 · 직원8명 기본급 247,313,000원 · 직원8명 재수당 76,026,110원 · 퇴직충담금 : 30,263,176원 · 4대 보험료 : 33,871,974원
관리운영비 (457,697)	관리운영비 (41,130)	· 여비: 1,320,000원 · 교육훈련비 : 2,000,000원 · 공공요금 및 체세 23,481,000원 · 소모품비 : 2,539,000원 · 우편통신비 및 유인물비 : 1,050,000원 · 차량유지비 : 1,600,000원 · 기타 9,140,000원
프로그램비 (8,000)	프로그램비 (8,000)	· 프로그램 운영비 : 8,000,000원

아. 민간위탁 재위탁 적격자 심의결과 : 적정 (보건의료정책과-37524
'17.11.27)

4. 서울특별시립 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가. 위탁 사무명 :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시립영보정신요양원은 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
-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공적 운영경험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정신질환자 입·퇴소 관리, 입소자 건강관리
- 환자인권 및 재산상 권리 보호
- 정신질환자 요양 보호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사업 -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
- 시설 안전관리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시설명 : 시립영보정신요양원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 시설규모 : 대지 21,824㎡/건물 4,281.78㎡(지상 4층)
- 지원시설 : 정신요양원
- 개소일자 : 2007년 9월

마. 민간위탁기간 : 5년('18.1.21~'23.1.2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 1,793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종사자 인건비 : 1,586백만원(종사자 35명)
 - 관리운영비 : 207백만원(입소자 183명)

IV. 참고사항

1.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제13조(준용)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나.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보건의료정책과-11439. '17.4.5)

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제13조(준용)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나.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보건의료정책과-19347. '17.6.20)

3.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정신재활시설 종류 및 사업) 【별표 10】

종 류		사 업
2. 재활훈련 시설	다. 지역사회 전환시설	지역내 정신질환자에게 일시 보호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p>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4. 서울특별시립 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검토보고의 대상이 되는 민간위탁 사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¹⁾ 및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²⁾ 및 제13조³⁾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⁴⁾ 및 제6조⁵⁾ 등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서울특별시립 영보정신요양원의 경우 위 조례에 의한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이 하자를 사후적으로 치유하고자 제출된 안임.

- 1)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 부칙 < 제6567호, 2017.7.13>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3) 제13조(준용)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 5)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고,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⑤ 생략

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동 검토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모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① 시립병원의 운영 및 ②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운영인 바,
 - 시립병원의 운영에는 기존 집행부 조직이 대응하기 어려운 의학적 전문 기술을 요구하며
 -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이 필요로 하는 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하겠음.

나.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서남병원은 동의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재활 및 노인성 질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진료 사업, 공공의료 확충사업 등 공공의료 사업, 병원 시설물 운영·관리 및 기타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연계체계 구축, 지역주민 대상 건강증진 및 교육 사업 수행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서남권(양천, 강서, 금천 그 외)의 유일한 시립병원으로 위치하고 있음.

※ 진료분야는 총 17개과로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응급의학과외 13개 임상진료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총 4개의 진료지원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상수는 총 327병상(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2병상 포함)임.(표 1 참조)

<표 1> 서남병원 병상 현황

구분	총계	일반병상				특수병상			
		소계	1인실	2인실	5인실	소계	중환자실	격리병실	완화의료
병실	81	69	6	8	55	12	3	4	5
병상	327	297	6	16	275	30	12	4	14

- 병원의 주요 업무인 진료·치료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 전체 환자수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표 2 참조)
 - 2017년 수탁자 변경(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 서울의료원)이 있었으며, 수탁자인 서울의료원은 상당한 진료실적 상향(약 20%)을 제안했으나, 2018년 7월말 기준으로 2017년 총 환자수의 55.8%의 진료실적을 보이는 등 담보상태에 있는 바, 서남병원의 실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표 2> 서남병원 환자수(외래, 입원)

병원명	구분	환자수(명)		
		계	외래	입원
서남병원	2018년 (7월말기준)	127,330	73,609	53,721
	2017년	228,123	132,461	95,662
	2016년	227,140	126,615	100,525

- 취약계층 진료실적은 외래환자 실적과 비교할 때, 2018년 7월말 현재 전년대비 64.2%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바, 전년대비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표 3 참조)

<표 3> 서남병원 환자수(취약계층)

병원명	구분	환자구분(명)			
		계	장애인 환자수	의료보호 환자수	특례의료 급여수급
서남병원	2018년 (7월말기준)	21,993	1,636	17,126	3,231
	2017년	34,216	3,369	25,581	5,266
	2016년	34,661	3,773	24,816	6,072

- 서남병원은 시립병원으로 공공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수탁하는 바 이들의 공공의료사업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표 4 참조)

<표 4> 2017년 서남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내역

사업명	구분	목표	실적	달성률 (%)	비고
서남건강안전망 사업(301)	대상자수(명)	200	248	124.0	서울시 /자체 예산
	예산(천원)	19,000	18,900	99.5	
뇌혈관튼튼 프로젝트	대상자수(명)	200	215	107.5	서울시 예산
	예산(천원)	21,500	21,441	99.7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대상자수(명)	300	474	158.0	서울시 예산
	예산(천원)	17,000	16,900	99.4	
무료진료 봉사	시행건수	8	9	112.5	자체 예산
	예산(천원)	2,000	1,961	98.1	

사업명		구분	목표	실적	달성률 (%)	비고
다문화가족이주여성 건강관리		대상자수(명)	50	52	104.0	자체 예산
		예산(천원)	2,995	2,820	94.2	
치매 환자 사업	원인확진 검사비 지원	대상자수(명)	20	53	265.0	자체 예산
		예산(천원)	3,705	3,555	96.0	
	원내 입원환자 치매 미술프로그램	대상자수(명)	90	92	102.2	자체 예산
		예산(천원)	4,680	4,505	96.3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 건강안전망 사업	시설종사자 전문성향상 교육	시행횟수	2	2	100.0	자체 예산
		예산(천원)	2,000	1,844	92.2	
	건강강좌	시행횟수	5	5	100.0	자체 예산
		예산(천원)	2,500	2,377	95.1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횟수	4	4	100.0	자체 예산
		예산(천원)	500	492	98.5	
노인건강증진 협의체		시행횟수	2	2	100.0	자체 예산
		예산(천원)	200	121	60.0	

- 서남병원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재단에 의한 평가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며, 2016년 공공보건의료계획수립에 대한 시행결과평가⁶⁾의 경우 97점으로 전국 평균인 73.9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표 5 참조)

6) 현재와 다른 수탁자임.

<표 5> 서남병원 외부기관 평가내역

평가기관명	평가기간	세부평가내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 의료재단	경영효율성(2015년), 그외(2016년1월~9월)	병원정책 및 거버넌스,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본원점수 : 752.0)
	경영효율성(2016년), 그외(2017년1월~9월)	병원정책 및 거버넌스, 공공성, 경영효율성, 의료의 질 향상(본원점수 : 805.6)
	경영효율성(2017년), 그외(2018년1월~9월)	병원정책및거버넌스,공공성,경영효 율성, 의료의질향상
보건복지부	2015.1~12월	공공성강화, 양질의 적정진료, 건강안전망, 미충족서비스 우수(본원점수 : 89.1)
	2016.1~12월	공공성강화, 양질의 적정진료, 건강안전망, 미충족서비스 최우수(본원점수 : 97.0)
	2017.1~12월	공공성강화,양질의적정진료,건강안 전망, 미충족서비스(미공개)
심평원	2015년	2등급(종합점수 :92.7)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2015년	1등급(종합점수 :95.7) 수술의예방적항 생제적정성평가
	2016년	1등급(종합점수 :85.29) 만성폐쇄성폐질 환 적정성평가
	2016년	1등급(종합점수 :92.6) 폐렴 적정성평가
	2017년	3등급(종합점수 :81.25) 유소아급성중이 염항생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2016.03.22~03.25	기본가치체계,환자진료체계, 지원체계, 성과관리체계(인증)
심평원	2016년상반기	항생제처방율2등급
	2016년하반기	항생제처방율3등급

- 상기 사업을 시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301네트워크 사업의 진행, 지역주민 건강안전망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병원 고유의 업무인 진료 업무(17개 진료과의 외래, 입원)등 시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어 왔음을 볼 수 있음.

- 따라서 주요 기능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임과 동시에 위탁하려는 사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왔음을 고려할 때, 서남병원의 민간위탁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2017년 민간위탁수탁자 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담보상태에 있는 바, 병원 장비 보강 및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서울의료원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바, 시장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음.
 -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 시민과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 공공의료의 질 향상과 시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전염병예방 등 보건의료사업
 -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 의학연구(임상연구 포함)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동부병원은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202병상으로 병원급인 서남병원보다 작은 병상수를 가지며, 진료과는 지원과를 포함하여 총 18개과를 운영하고 있음(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학과, 치과, 미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영상의학과, 건강관리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표 6> 동부병원 병상 현황

구 분	합 계	일반 병실				중환자실
		1인실	2인실	4인실	5인실	9인실
병 실	54	2	20	4	27	1
병 상	202	2	40	16	135	9

- 병원의 주요 업무인 진료와 치료를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 전체환자 수는 6천여명 감소하는 등 진료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음.
- 2018년 7월말 기준으로 2017년 총 환자수의 56.4%의 진료실적을 보이고 있는 바, 전년 실적 대비 진료실적 향상을 위한 집행부와 민간위탁 수탁자의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표 7> 동부병원 환자수(외래, 입원)

병원명	구분	환자수(명)		
		계	외래	입원
동부병원	2018년 (7월말기준)	114,278	78,550	35,728
	2017년	202,443	141,589	60,854
	2016년	208,298	148,084	60,214

- 그러나 상기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동부병원의 취약계층 진료율은 2016년 54.2%, 2017년 57.8%, 2018년 7월 현재 59.0%로 다른 민간위탁 시립병원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바, 앞으로 흑한기를 앞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다면 동부병원의 취약계층 진료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표 8> 동부병원 환자수(취약계층)

병원명	구분	환자구분(명)			
		계	장애인 환자수	의료보호 환자수	특례의료 급여수급
동부병원	2018년 (7월말기준)	67,475	555	65,249	1,671
	2017년	117,186	993	113,118	3,075
	2016년	113,098	957	109,510	2,631

- 동부병원은 공공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서울의료원이 수탁한 바, 이들의 공공 의료사업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표 9> 동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내역 2017년

사업명		구분		목표	실적	달성률 (%)	비고
301 네트워크 사업	의뢰건수	건	100	113	113	서울시 예산, 자체예산	
	예산	천원	36,828	33,346	90.5		
시민공감응급실	사회복지상담서비스	건	750	644	85.0	국비 예산	
	지역사회자원연계	건	650	580	89.0		
알코올해독클리닉	사회복지상담서비스	건	160	205	128.0	서울시 예산	
	지역사회자원연계	건	50	136	256.0		
	지역사회네트워크간담회	회	12	10	83.0		
	매뉴얼북제작및배포	기관	20	20	100.0		
	노숙인일자리갯기	명	10	10	100.0		
	예산	천원	265,659	219,506	82.6	서울시 예산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재가암환자완화의 힐링프로그램	운영횟수	건	2	2	100.0	국비 예산
		예산	천원	800	800	100.0	

사 업 명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률 (%)	비 고
취약계층 공공의료 사 업	사랑나눔의료봉사	진 료 실 적	명	5,000	3,938	78.8	자체 예산	
	무 료 독 감 접 종	실 적	명	50	86	172.0		
	다문화가정학생무료검진	실 적	명	50	33	66.0		
	지역사회원외상담	인 원	명	240	265	90.5		
	진 료 비 감 면	지 원 금 액	천원	200,000	215,960	107.9	자체 예산	
지역협의체 운 영	시민위원회 개최	운 영 회		2	2	100.0	자체 예산	
		예 산	천원	1,000	928	92.8		

- 동부병원은 행려환자(노숙인 등)를 치료해온 역사가 길고, 전병상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안심병동) 운영하고 있는 등(총 173병상 운영, 운영병상 100%, 특수 진료과목 제외) 그간 민간위탁방식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하여 공공의료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고 판단됨.
- 특화 사업으로 알코올해독클리닉⁷⁾ 운영 등 현 수탁자인 서울의료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료사업을 진행해 온 바, 그간의 실적을 판단해 볼 때 동부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라.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 민간위탁 동의안

- 지역사회전환시설 새오름터는 만성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적응 및 독립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신장애인 탈원화 추세에 부응하는 정신건강복지시설로서 의료와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7) 의료-치안-자활 3각 협력 모델로 (노숙인 알콜)중독자와 고위험군 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입원치료와 상담 등을 제공

- 예산은 2018년 기준으로 4억7천5백만원으로, 2016년 4억8백만원에서 6천7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이용자는 2016년 136명에서 2018년 96명으로 40명 감소하였음.

※ 단기(3개월 이내) 및 초단기(2주)의 재활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특성상 연말기준으로는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2018년 실적은 7월31일 기준임.

< 표 10> 새오름터 예산과 이용자수

연 도	예 산 (백만원)	이용자 수
'16년	408	136
'17년	430	158
'18년	475	96

- 표 11과 같이 새오름터의 외부기관(보건복지부)평가는 총점등급 A로 높은 편인 바, 정신건강복지시설에서 윤리적으로 요구되는 이용자의 권리는 A로 평가 받았으며. 지역사회관계도 전국평균(B)보다 높은 A를 기록하고 있는 등 양질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시설 및 환경분야에서는 전국평균 B에 못 미치는 C 평가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시설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표 11> 새오름터 외부기관 평가결과

시설명	총점 등급	평가 영역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새오름터	A	C	B	B	A	A	A
서울시 평균	B	A	B	B	A	A	B
전국 평균	B	B	C	B	A	A	B

- 새오름터의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정원을 맞추어 적절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⁸⁾(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에 의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12> 새오름터 최근 3년간 인력구성

시설명	2015년			2016년			2017년		
	정원	현원	자격여부	정원	현원	자격여부	정원	현원	자격여부
새오름터	8	8	-7명: 정신건강전문요원 - 1명: 사회복지사	8	8	-7명: 정신건강전문요원 - 1명: 사회복지사	8	8	-7명: 정신건강전문요원 - 1명: 사회복지사

- 민간위탁시설의 경우 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만큼 사무에 대한 책임성은 민간위탁기관에 있다고 할 것이나, 예산을 지급하여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새오름터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2016년 종사자 경력산정과 관련한 오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 그러나 위탁한 사무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집행부 조직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적응 및 독립훈련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을 하지 못하고, 외견적인 업무수행상의 적법성 여부만 검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실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8)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

<표 13>새오름터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시설명	연도		지적내용	처리결과	공무원출장내역
새오름터	'16년	6월 24일	지적사항 없음.	-	정00,김00
		11월 30일	■직원 근무경력 인정범위 오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6할만 인정하여 입사 이후부터 '16.11.30.까지 839,180원 미지급됨	■2016년 12월 급여 지급 시 8할인정하여 839,180원 소급 지급함.	신00, 김00
	'17년	8월 14일	지적사항 없음.	-	김00, 서00
		12월 28일	지적사항 없음.	-	김00, 서00
	'18년	6월 17일	지적사항 없음.	-	김00, 윤00

마. 서울특별시립 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정신질환자 생활시설인 영보정신요양원은 여성정신질환자 전용의 생활 시설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해 있는 시설임.
 - 주된 서비스는 생활하는 이용자들의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궁극적으로 사회재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조현병 증상을 가진 무연고자인 것으로 나타남.(정원은 200명이고 현원은 183명임)
 - 예산은 2018년 현재 22억7천 만원으로서 생활시설의 특성상 상당한 예산이 수반된다 할 것이나, 시설 이용자수는 2016년 180명에서 2018년 183명으로 정원(200명)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사료됨.
- ※ 최근의 탈원화 기조로 인해 대형시설에 대한 찬반은 존재할 수 있으나 무연고자가 대부분인 영보정신요양원 이용자의 특성상 이들에게 ‘탈원화’라는 지향성을 무리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짐.

<표 14> 영보정신요양원 예산과 이용자수

연 도	예 산 (백만원)	이용자 수
'16년	2,066	180
'17년	2,117	179
'18년	2,277	183

- 영보정신요양원의 (보건복지부)평가는 총점등급 A로 높은 편이며 대부분의 영역에서 고르게 A가 나타났지만, 이용자권리 측면과 인적자원 관리측면에서 B평가를 받았음.
 - 대형 생활시설의 경우 이용자 권리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한 바, 서울시 소재 생활시설과 전국시설 평균을 보면, 이용자의 권리는 평균이 A이지만, 영보정신요양원만이 B인 점은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고 여길 여지가 있음.(표 15 참조)
- 민간위탁의 의미는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에 있는 바, 정신질환자 생활시설이 가져야 하는 전문성 중 하나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이용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하고자 하는 전문직 직업윤리라고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자의 권리 측면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온 점에 대한 수탁자의 해명과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이용자 권리측면에서 낮은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건강국의 지도감독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실무상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직원(1명)의 업무수행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기관(특히 경기도 소재 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내실 있고 전문성 있는 지도 감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표 15> 영보정신요양원 외부기관 평가결과

시설명	총점 등급	평가 영역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사업실적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영보 정신요양원	A	A	A	B	A	B	A
서울시 평균	A	A	A	B	A	A	B
전국 평균	B	A	C	B	A	A	A

<표 16> 영보정신요양원 지도감독 결과

시설명	연도		지적내용	처리결과	공무원출장내역
영보 정신요양원	'16년	6월 17일(금)	지적사항 없음.	-	박00, 김00
		12월 19일(월)	지적사항 없음.	-	박00, 김00, 박00
	'17년	7월 11일(화)	지적사항 없음.	-	김00
		8월 31일(목)	지적사항 없음.	-	김00, 김00
		12월 6일(수)	지적사항 없음.	-	김00, 김00
	'18년	6월 14일(목)	지적사항 없음.	-	김00

3 동의안의 법률적 검토

가. 제출 경위에 대한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가 아래 표(표 17)와 같이 개정(2017.07.13.)된 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의회 보고로 갈음하였으나, 개정된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한 번도) 얻지 않은 민간위탁사무의 경우에는 개정조례 공포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개선되었음.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가 최초로 규정된 2012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되기 이전에 체결된 민간위탁사무의 경우에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방식으로 연속하여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통해 견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칙을 통해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사료됨.

<표 17> 쟁점조문 비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17년 1월 5일	2017년 7월 13일
<p>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u>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략</p> <p>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u>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③ 생략</p> <p>④ 생략</p> <p>부 칙 < 제6567호, 2017.7.13 >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u>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된 4개의 안건은 2017년 7월 13일 이전에 의회에 재위탁 보고를 완료하였으나, 2017년 7월 13일 이후에 실제 재위탁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재위탁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부칙 조항 위배의 소지가 있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임.

나. 사회복지시설(새오름터, 영보정신요양원 관련) 민간위탁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조례(일반법)가 아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복지시설조례’)」에 규정되어 있음.
- 사회복지시설조례는 최근 개정된 내용(2018.5)에 따라 민간위탁조례의 의회동의절차를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전에는 의회동의절차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음.
- 금번 동의안으로 제출된 사회복지시설(새오름터와 영보정신요양원)은 2018년 1월 이전에 재계약·재위탁된 바, 종전 사회복지시설조례에 따를 경우 의회동의절차 준용조항이 부재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의회 입법고문 자문결과에 따르면 “타 법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도 일반법이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특별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법에서 특별하게 그 의무를 해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법을 준용하여 의회동의의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함.
- 이에 의회 사후적 동의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새오름터, 영보정신요양원) 민간위탁사무의 법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표 18> 쟁점조문 비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년 1월 5일	2017년 7월 13일	2017년 1월 5일	2018년 5월 3일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같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략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같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같음한다.
		의회 동의의무 부과하지 않음.	

다. 시립병원(서남병원, 동부병원 관련)

- 본 동의안의 제출이 행정행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출되었기 때문에 본 동의안 처리에 앞서 하자치유의 내용에 대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하자의 치유란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 하자가 있더라도 사후에 보완하여 소급하면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만 인정하는 사안임.
- 이러한 사유에서 볼 때 하자치유의 대상인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동의안(의안번호:80)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의안번호:79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의안 처리에 앞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동부병원의 경우 동일수탁자(서울의료원)가 반복하여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공모과정에서도 공모에 응하여 수탁의사를 밝힌 법인이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서남병원의 경우 기존 수탁자(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가 수탁의사를 밝히고 수탁자로서 참여하기 위하여 공모에 응했으며 현 수탁자인 서울의료원과 경쟁한 바 있음. 그런데 행정행위의 하자치유란 절차적인 정의를 사후적으로 소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탈락한 수탁자의 존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
- 의회 입법고문자문의뢰 결과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13274 판결에 따라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관련 민간위탁시설 수탁자 선정절차에 참여한 다른 신청자가 존재하고, 그가 행정상 경원자 소송⁹⁾ 등을 제기한다면 사후적 사법판단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함.

9) 경원자소송(競願者訴訟)은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명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한쪽에 대한 허가가 다른 쪽에 대한 불허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서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 또한, 현 수탁자와의 관례에서는 사후적 하자치유 차원에서 의회동의의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나, 수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의 선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소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음.
- 이러한 의견을 참고해 본다면 현 수탁자인 서울의료원과의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 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기존 수탁자이자 수탁자 선정에 참여한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위법한 행정행위에의 하자를 의회가 사후적 동의를 통해 치유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4 종합의견

- 법률적인 하자 치유와 관련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사후적 동의와 관련하여 입법법률자문의견을 참고하여 볼 때 법률적 하자치유는 가능한 상황이라 할 것임.
- 그러나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의 안이한 사무처리방식에 대하여 의회가 사후적 처리를 할 수 있는 관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할 경우에 대비한 입법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임.
- ※ 민간위탁사무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등 흠결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직영사무로 전환하는 등의 법적 강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 또한 서남병원 민간위탁사무 동의의 경우에는 중대한 권리침해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